

##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 . .  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포상조례 내용중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포상 절차중 “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”외에 “민주시민질서상”을 추가함(안 제12조 제1항)
- 나. 공적심의회 회의 심의사항에 “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”외에 “민주시민질서상” 및 “다른 기관·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 추천”을 추가함(안 제12조 제2항)
- 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 2 제4항)
- 라. 시민대상 담당부서를 “문화관광과”에서 “총무과”로 함(안 부칙 제2조)
- 마.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가. 입법예고결과 1부.

##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”를 삭제한다

제12조 제1항중 “제5조와 제6조”를 “제5조, 제6조 및 제10조”로 하고,  
동조 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5조,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·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의2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【별지 제6호서식】에 의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.

【별지 제5호 서식】중 “직위 또는 성명”을 “직위 또는 직급”으로 한다.

【별지 제6호 서식】을 “<별지>”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영주시민대상조례 제7조제2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 (수상자의 결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

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공적심의 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 영주시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<별 지>

[별지 제6호서식]

### 공적 서면심의 의견서

심의안건 :									
훈 격 :									
선발(추천) 인원 :   명					부서 추천인원 :   명				
서면심의 사유 :									
부서 추천자 현황									
소 속	직 급	성 명 (인명)	성 별	총 현 현	근 직 부	서 훈 징 계	공 적 개 요(요약)	심의결과	
								가(可)	부(否)
의 견		위와같이 심의함.							
		년   월   일							
영주시공적심의회			직위		성명		서명		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 【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(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. 기관·단체나 그 임·직원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.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..... ..... ..... .....&lt;삭 제&gt;..... .....</p>
<p>제12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담당관·과장, 소속 행정기관장, 읍·면·동장은 【별지 제4호 서식】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</p> <p>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은 영주시 공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	<p>제12조(포상절차) ① 제5조, 제6조 및 제10조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② 제5조,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·단체에서 행하는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.... .....</p>
<p>제12조의2(공적심의회) ①~③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제12조의2(공적심의회) ①~③&lt;현행과 같음&gt;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【별지 제6호서식】에 의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.</p>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지 제5호서식】 포 상 대 장										【별지 제5호서식】 포 상 대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수	포상 년월일	포상 종별	포상 기간	포 상 수 상 자			포상 원칙적 요	기념 포부 상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소속 주	직위 명	성명				성명	성명	성명	포상 원칙적 요	기념 포부 상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설							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별지 제6호서식】 공적 서면심의 의견서</p> <p>심의안건 : _____</p> <p>추천후격 : _____</p> <p>선발(추천) 인원 : 명    부서 추천인원 : 명</p> <p>서면심의 사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서 추천자 현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소속</th> <th>직급</th> <th>성명 (인명)</th> <th>성명</th> <th>추천 원칙적 요</th> <th>선 계</th> <th>공적개요 (요약)</th> <th>심의결과 가(리)전(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의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같이 심의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영주시공직 심의회</td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직위</td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성명</td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성명</td> </tr> </table>										소속	직급	성명 (인명)	성명	추천 원칙적 요	선 계	공적개요 (요약)	심의결과 가(리)전(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영주시공직 심의회	직위	성명	성명
소속	직급	성명 (인명)	성명	추천 원칙적 요	선 계	공적개요 (요약)	심의결과 가(리)전(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주시공직 심의회	직위	성명	성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【영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	<p>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총무과장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</p>
<p>제8조(수상자의 결정) ① 제5조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2명씩 선발한다</p> <p>② 제1항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자를 각 부문마다 1명씩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다만, 공적심의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(수상자의 결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.</p> <p>②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공적심의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 영주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.</p>

## 입 법 예 고 결 과

- 조 례 명 :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예고방법 : 영주시보 제218호로 예고(2000. 2. 7)
- 예고기간 : 2000. 2. 7~2000. 2.28(21일간)
- 의견제출 여부 : 제출의견 없음

## 의안검토보고서

### 1. 의안

- 의안번호 : 제105호
- 의안명 : 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행정지원국 총무과

### 2. 개정이유

포상조례 내용중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포상 절차중 "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"외에 "민주시민질서상"을 추가함(안 제12조제1항)
- 나. 공적심의회 심의사항에 "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"외에 "민주시민질서상" 및 "다른 기관·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 추천"을 추가함(안 제12조제2항)
- 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2제4항)
- 라. 시민대상 담당부서를 "문화관광과"에서 "총무과"로 함(안 부칙 제2조)
- 마.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4. 검토의견

영주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
- (안) 제2조중 (이하 "단체"라 한다)를 삭제하고
- (안) 제12조제1항중 "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"외에 "민주시민질서상"을 추가하였음.
- (안) 제12조제2항, 공적심의회 심의사항에 "표창장, 감사장 또는 공로상"외에 "민주질서시민상" 및 다른 기관·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 추천"을 추가함.

- (안) 제12조의2제3항 다음에 제4항 신설
  -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“서면 심의로”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 토록함.
- “부칙” 제2항(다른 조례의 개정)
  - 영주시민대상조례 제7조제2항 중 간사를 “문화관광과장”에서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
  -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영주시포상조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.

본 조례안을 검토한바

영주시포상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하면

- 영주시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은 공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
- 제12조의2 제4항 신설내용중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발에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
- 그 외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4. 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